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57
----------	------------

제안연월일 : 2024년 2월 2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상위법의 조항을 인용함에 있어 보편적·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① 상위법 조항의 제목까지 기재하였고 ② 조·항·호를 붙여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띄어 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통일성과 자구의 체계성 측면에서 수정함.

2. 주요내용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 를 각각 “제10조의2제3항제2호” 로 수정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 를 각각 “제10조의2제3항제2호” 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u>신설</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이설</u> 및 <u>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u></p> <p>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u>신설·이설</u> 및 <u>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u></p> <p>3.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 ----- -----.</p> <p>1. ----- -----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u>」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 포함한다)</p> <p>2. ----- ----- <u>설치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u>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 ----- -----.</p> <p>1. ----- -----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u>」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 포함한다)</p> <p>2. ----- ----- <u>설치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u> -----</p> <p>3.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신설”을 “「장애물·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로, “포함한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을 “설치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u>신설</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u>포함한다</u>)·<u>이설</u> 및 <u>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u></p> <p>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u>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u></p> <p>3.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 ----- -----.</p> <p>1. -----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u>---- <u>포함한다</u>)</p> <p>2. ----- ----- ----- ---- <u>설치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u> -----</p> <p>3. (현행과 같음)</p>